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 신규 지정

- 3년간 지정 유지,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및 '재정지원 사업' 지원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지위는 3년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 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9일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2개 기업이 신청했고 9개 기업이 신청을 철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53개 기업에 대하여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조직형태 등을 고려해 서류검토·현장실사, 지정심사를 거쳐 37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회적 목적 유형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창의혁신형 기업이 10개, 일자리제공형이 5개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사회공헌형과 혼합형도 각각 2개와 1개가 포함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181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이 중 5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으며,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이번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사회적
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210)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044-202-3203)



- <붙임> 1. 2023년도 신규 지정기업 현황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및 지정 현황
 3.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지정번호	지역	기관명	대표자	지정기간
제2023-01	강원	주식회사 하늘에듀케이션	정지영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02	경기	주식회사 서로돌봄	박성숙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03	경북	(주)꿈바라기 장애인통합교육센터	석정이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04	광주	주식회사 도연	이경운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05	광주	사단법인 공감인어스	김경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06	광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혜숙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07	대전	사회적협동조합 담쟁이	이하영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08	대전	온통 사회적협동조합	김은정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09	대전	라움 사회적협동조합	신진섭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0	부산	(주)마음알지	윤치연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1	부산	(주)마인드마인드	정지윤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2	부산	굿모닝사회적협동조합	이동혁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3	서울	디아앤코 주식회사	이디다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4	서울	주식회사 마음챙김놀이터	유혜현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5	인천	염전골햇빛발전 협동조합	장시정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6	전남	함께해요 사회적협동조합	문유님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7	전남	(주)사회서비스기업남도누리	나성원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8	충북	주식회사 포유앤미	우현주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19	경기	클린쿱사회적협동조합	전난순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0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꽃길	이민혁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1	경북	새늘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황외순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2	부산	(주)브레인힐	정상원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3	서울	마술빛자루협동조합	김정식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4	세종	사회적협동조합세종통합돌봄센터	장백기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번호	지역	기관명	대표자	지정기간
제2023-25	충북	언더스텐 주식회사	배지현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6	제주	사회적협동조합 품에	정유경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7	인천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김유현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8	충남	두빛나래 주식회사	김지미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29	대전	주식회사 케이히어링	구민승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30	광주	주식회사 헬프포유	김윤서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31	대전	주식회사 유알테크	이상우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32	대전	주식회사 다가치(equal value Co.,Ltd.)	정혜진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33	서울	주식회사 키블(KIVEL Inc.)	함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34	서울	(주)한국장애인신문	정원탁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35	서울	(주)웹브	유재상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36	서울	주식회사 피플즈	김범준	지정일로부터 3년
제2023-37	울산	주식회사 에세르	임수경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 기간 : 공고일(2023.10.31.)로부터 3년 (2026년 10월 30일까지)

※ 단,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위 지정기관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타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세부내용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 원대 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1개소(21년) 	-	○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영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2)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 지원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 원대 상	
		예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추가지원: 예비 20%, 인증 30%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내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	○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8개 조합, 468억원 규모) * '23년도 제9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연도별)

(단위: 개/ 2023.10.30. 기준)

연도 구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지정	181	7	9	6	4	5	6	10	40	47	28	19
인증	56	4	5	6	4	2	4	7	13	10	1	-
만료	67	3	3	-	-	3	2	3	26	27	-	-
취소	7	-	1	-	-	-	-	-	-	6	-	-
반납	5	-	-	-	-	-	-	-	1	4	-	-
유지	46	-	-	-	-	-	-	-	-	-	27	19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지정후 3년간 유효

붙임 3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구분	내용
<p>사회서비스 제공형</p>	<p>○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p> <p>-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p> <p>※ 실적 산정 기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원 기준: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p> <p>가. <u>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u>: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p> <p>나. <u>노인장기요양서비스</u>: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p>
<p>일자리 제공형</p>	<p>○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p>
<p>지역사회 공헌형</p>	<p>○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p> <p>㉠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p> <p>㉡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p> <p>㉢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p>
<p>혼합형</p>	<p>○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p>
<p>기타(창의·혁신)형</p>	<p>○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p>